

2026년 대비 2순환 법무사 민사소송법

강의계획서

일정 2026년 5월 6일(월) ~ 5월 22일(금), 13회

교재 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 + 법무사 법전 + 사례자료(제공)

강의시간

오전 9:00 ~ 오후 12:30

강사

김 춘 환

법무사 민사소송법 최선의 선택 !!!

김춘환 민사법을 믿고 따라오시면,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 강사 소개

1. 약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민사법 전공)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Ph.D, 민사법 전공) 수료

前 月刊 考試界 기획위원

前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강사(민법, 민사소송법)

前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전문가 과정 강사(민법, 민소법)

現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이사(회장 김인철 상명대학교 지적재산학과 교수), 중앙법학회 이사

現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인천대 법학과, 성신여대 법학과 특강 강사

現 월비스 나무경영아카데미 민법 전임교수

現 해커스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민법, 민사소송법 전임교수

現 공단기 법원직 민사소송법 대표 강사

2. 저서

Slim 민사소송법 조문집 제6판(2020), 학연 刊

Fortune 민법 (2021), 학연 刊

Fortune 민법의 종결 (2021), 학연 刊

Theme 민소법 핵심 암기장 전정2판(2021), (주)월비스 刊

Fortune 김춘환 법무사 핵심 암기장(2023, 신간), 학연 刊

Fortune 김춘환 민사소송법 제12판(2024), ACL 刊

□ 문의 및 질문

DAUM카페 : 김춘환민사법연구소, cafe.daum.net/chunzivilprozess

□ 법무사 2차 민소법의 특징

1. 판례 위주의 출제

현재 시점에서 법무사 민소법 문제의 특징은 중요 判例의 사실관계를 거의 그대로 출제하면서, 그 판례에 대한 쟁점을 문제로 삼아 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출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출제되었습니다.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은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乙은 丙법인에 대하여 1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丁 역시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 견해의 대립이 있을 경우 대법원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를 것)

[추가된 사실관계]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법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때 甲은 丙법인의 대표자를 A로 표시하였고, 제1심법원은 A를 丙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한 후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이 甲의 전부승소판결을 내렸고, 이에 丙법인의 대표자로 기재된 A가 丙법인을 대표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절차가 진행되던 중 甲의 丙법인에 대한 소제기 전 丙법인의 대표자 A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甲, 丙법인 및 항소심법원은 이에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변론을 종결하였다. 이후 항소심법원은 A에게 丙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丙법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1. 이 경우 제1심법원 판결 및 항소심법원 판결의 적법성을 논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2. 문제의 형식

그리고 문제의 형식으로는 판결의 적법성과 그 논거를 설명하라고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목차를 달아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I. 제1심법원 판결 및 항소심법원 판결의 적법성

제1심법원 판결 및 항소심판결의 위법하다.

II. 논거

1. 대표권의 직권 조사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대판 2022. 4. 28. 2021다306904).

2. 제1심판결의 위법성 -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사안의 대표자 A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이 있었으므로, 대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1심법원은 A를 丙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그 대표자에게는 그 소송에 관하여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장 부분이 단체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A가 丙법인을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甲이 그 대표자 A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대판 2024. 4. 12. 2023다313241). 그러나 그 개개의 소송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무권대리(대표)를 간과한 판결은 유효하고 위법하게 된다(제424조 1항 4호, 제451조 1항 3호 참고).

3.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판 2024. 4. 12. 2023다313241). 따라서 항소심절차 진행 중에 A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원고 甲에게 보정을 명하여 소장에 표시된 피고 丙법인의 대표자를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사람으로 보정하도록 하고, 보정이 이루어지면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 사람에게 소장 부분을 송달함으로써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의 판결은 위 보정을 하게 하는 조치를 얹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제423조).

3. 공부 방법

(1) 강사의 강의에 충실

현재는 법무사 문제는 법원공무원교육원의 교수, 강사분들이 출제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법원행정고시, 사무관승진, 서기보 시험도 출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추세는 서기보시험에 출제하였던 (객관식) 판례 등을 변형하여, 2차 형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강합니다. 특히 그 출제 판례에 대해서는 서기보시험에서 민사소송법 1위를 하고 있는 김춘환 강사가 누구보다 判例 등을 제일 잘 분석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강의를 잘 따라오면, 법무사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여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수험 민소법의 이해

법무사 민사소송법은 빠른 시간 내에 민사소송법 전반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출간한 ‘수험 민사소송법의 이해’ 교재는 빠른 시간에 민사소송법 전반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이므로, 법무사 민소법 강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교재를 습득하면 적어도 법무사 시험을 보는 경우 ‘합격’을 위한 실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논리전개 내지 논증의 틀(폼)

(1) 이하의 내용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님¹⁾의 글이니 민사소송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2) ‘○○제도에 대하여 논하라’는 문제에서 1.의의 2.취지, 근거, 법적 성질, 기능 3. 요건 4. 효과 식의 정형적인 품이 있듯이, 사례문제에서도 그 사례문제의 성질에 따라 몇 가지의 품을 미리 만들어 두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예:

1. 문제의 분석(문제점의 추출⇒논점의 문제제기, 문제의 소재)
2. 논점 전개
 - (1) 정의, 원칙, 예외(수정), 규범
 - (2) 문제로부터 요건정립, 취지, 논점의 결론, 반대설, 반대설 비판
 - (3) 전제, 이론적 귀결, 부당성 지적, 규범, 허용성, 특수성
3. 사안 적용 - 삼단논법의 귀결
4. 사안 해결 - 물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 긴요

5. 공부 방법상의 유의점

- (1) 제도나 논점에 대해 왜(WHY?)라는 질문을 항상 던지고, 취지 등에 대하여 생각한다.
- (2) 유사한 제도나 논점의 상호 비교, 구별 표시 정확하게 이해, 아이덴티티 확립
- (3) 제도나 논점의 골격을 먼저 기억하고 거기에 공부가 더해 감에 따라 살을 붙혀 나감
- (4) KEY WORD 중심의 공부
- (5) 판례 태도 정확하게 기억(우리 판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 (6)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 하지 말고(다침!!!)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7) 모든 공부는 결국 시험장에서의 답안작성을 위한 것임을 명심하여 평소 답안작성연습을 꾸준하게 하고 책을 읽어나갈 때에도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을 찾는 방식으로 공부하고(효율적인 마킹) 결과물을 간결하게 머리속에 정리해 두고 자주 되새김질을 한다.

1) 김○○, P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제43회·제48회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행정고등고시 출제위원

회수	일시	중요쟁점
제1회	5/6(수)	1. 소송과 비송의 한계-과거의 양육비 청구 2. 민사소송과 신의칙 -신의칙 위반의 행위에 대한 판단(辨 34) 3. 민사소송에서 재판권의 인정여부 4. 법원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관한 치유여부(辨 39) 5. 관할 - 당사자거동에 의한 관할(합의관할(勞 10회), 변론관할, 司 34, 50, 55, 勞 11회) 6. 이송결정의 구속력(司 41)
제2회	5/7(목)	7. 당사자 확정[사망자당사자소송(辨 40, 司 50, 54, 法 15, 勞 11회), 법인격부인] 8. 당사자능력(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당사자능력, 司 50) 9. 당사자적격[이행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司 46,47, 法 13), 확인의 소의 피고 적격(司 54), 제3자 소송담당(勞 1)과 채권자대위소송(司 39,41,43,48,53,54)]
제3회	5/8(금)	10. 소송능력(소송무능력과 흠결시의 법원의 조치)(辨 44) 11.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司 40) * 파기환송 후 소송대리권의 당연부활 여부 - 심급대리원칙, 파기환송판결의 성질(司 37, 法 2022 기출) 12. 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법리의 인정여부, 무권대리인(司 55) 13. 변호사법 위반의 소송행위의 효력
제4회	5/11(월)	14. 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수집방법과 소송요건의 선순위성(司 54) 15.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司 43, 48, 法 14) 16.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 대상적격, 즉시확정의 이익(法 13) 17. 소송물이론-내용, 식별기준, 상대성인정여부(司 28, 41, 51, 53, 54) *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무변론판결(司 45, 57)
제5회	5/12(화)	18. 중복소제기의 금지-상계의 항변(辨 46, 司 53), 채권자대위소송(司 43, 54 法 12), 채권자취소소송(法 16) 19. 중복소제기의 금지-단일청구에 대한 확인청구과 이행청구(辨 42) 20. 소제기의 실체법상 효과-피고의 방어방법과 시효중단 21. 공개심리주의 - 영업상, 사생활의 비밀(司 53) 22. 처분권주의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 형식적 형성의 소(司 44, 56, 辨 44) 23. 채무부존재확인 소와 처분권주의(辨 44) 24. 처분권주의-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司 45, 49) 25. 처분권주의 -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물(辨 41) 26. 변론주의에서의 사실의 주장책임[간접적 주장인정여부(司 44, 52),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司 47, 勞 10회),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 포함여부(司 51, 57), 석명권(勞 11회) 27. 지적의무(시사의무)- 석명권과의 관계(司 51)
제6회	5/13(수)	* 적시제출주의, 이의권 * 변론준비절차(준비서면) 28.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 - 부인과 항변의 구별(司 42, 48, 57) 29. 소송에 있어 형성권의 행사 - 소송상 상계의 항변(辨 46) 30.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의 성질(辨 45, 司 56) 31. 소송행위의 하자과 그 취소 여부(辨 40, 司 51) 32. 변론기일에 있어 당사자의 결석 - 기일의 해태(司 45, 47, 57, 法 13)

		<p>33.무변론판결(司 45) * 추후보완제도, 송달(司 55)</p> <p>34.소송절차의 중단-당연승계의 인정과 수계절차의 의미(司 54, 56)</p>
제7회	5/14(목)	<p>35.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력(司 37)</p> <p>36.불요증사실- 재판상 자백(司 50, 53), 현저한 사실 *유일한 증거(辨 47)</p> <p>37.서증 - 문서의 증거력의 추정(司 50, 52, 勞 9), 서면증언의 특례(司 46) * 증인에 대한 감치제도의 신설</p> <p>38.문서제출명령(司 47)</p> <p>39.당사자신문 - 보충성의 폐지 * 증거보전(辨 46)</p>
제8회	5/15(금)	<p>40.변론전체의 취지의 독립적 증거원인성</p> <p>41. 자유심증주의(勞 1)-증명방해(입증방해)의 문제</p> <p>42.증명책임의 분배와 완화(司 45)</p> <p>43.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복멸(辨 39)</p> <p>44.소송종료선언(司 43)</p> <p>45.채소금지- 당사자동일((司 48), 소송물 동일의 문제</p> <p>46.채소금지-소의 교환적 변경과의 관계(司 52)</p> <p>47.소송상 화해의 효력-기관력의 제한적 인정여부(司 39)</p> <p>48.화해권고결정</p>
제9회	5/18(월)	<p>* 판결의 의의 및 종류, 기속력(판결의 경정), 형식적 확정력</p> <p>49.변론종결(표준시)뒤의 형성권의 행사(司 49, 勞 10회)</p> <p>50.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기관력의 시적한계(司 43, 49)</p> <p>51.변론종결전의 법률관계-기관력의 표준시</p> <p>52.기관력의 작용-선결관계(司 52)와 모순관계</p> <p>53.판결이유 중의 판단의 구속력 인정여부(辨 43, 司 52)</p> <p>54.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辨 39)</p> <p>55.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변론종결전의 승계인과의 비교(辨 38, 司 56)</p> <p>56.판결의 반사효의 인정여부</p> <p>57.판결의 무효-상소의 대상적격</p> <p>58.판결의 편취-소송법상 구체책(司 40, 55)</p> <p>59.판결의 편취-집행시의 구체책과 실제법상 구체책(司 40) * 가집행선고, 소송비용</p>
제10회	5/19(화)	<p>60.단순병합과 예비적 병합 - 불능에 대비한 대상청구의 성질(辨 43) * 선택적 병합 - 판결이유가 다른 경우의 항소심법원의 판단(辨 46)</p> <p>61.예비적 병합 - 양립불가능성의 요건여부(辨 46)</p> <p>62.예비적 병합에서의 일부판결의 허부(司 46, 辨 46) * 예비적 병합과 불이익변경의 원칙(司 51회)</p> <p>63.청구기초의 동일성의 개념</p> <p>64.교환적 변경의 경우의 피고의 동의여부</p> <p>65.청구의 변경의 간과-법원의 처리방법</p> <p>66.중간확인 소-선결성의 요건의 의미</p> <p>67.항소심에서의 반소-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司 46)</p> <p>68.반소요건 등의 조사 - 반소요건의 흡결시의 조치</p>

제11회	5/20(수)	<p>69.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의 수정-증거공통,주장공통의 원칙 인정여부(司 38, 45, 47, 53, 56, 勞 1)</p> <p>70.고유필수적·유사필수적·통상공동소송의 판단기준(司 38, 45, 47, 52, 57, 勞 11회)</p> <p>71.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개정전의 상황과 현재의 규정(司 46, 49, 53, 55)</p> <p>72.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의 인정여부(司 49, 57)</p> <p>73.선정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p> <p>74.선정당사자-심급을 한정된 선정의 인정여부</p> <p>75.선정당사자-선정 후의 선정자의 지위</p>
제12회	5/21(목)	<p>76.보조참가-소송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보조참가의 이익)의 의미(辨 45)</p> <p>77.보조참가-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한행사가 가능한지 여부</p> <p>78.보조참가-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의 성질(司 50)</p> <p>* 공동소송참가(勞 10회)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비교(司 48)</p> <p>79.소송고지-소송고지의 효과(司 51, 勞 9)</p> <p>80.독립당사자참가-이중매매의 경우에 권리주장참가의 가능여부</p> <p>81.독립당사자참가-사해방지참가의 '권리침해'의 의미</p> <p>82.독립당사자참가-판결에 대한 상소의 문제(司 50)</p> <p>83.임의적 당사자 변경 - 일반적 허용여부와 법적성질(司 51)</p> <p>* 소송승계(당연승계, 특정승계- 참가승계, 인수승계, 司 56)</p>
제13회	5/22(금)	<p>84.상소권포기의 가능여부</p> <p>85.불상소의 합의-직권조사사항여부</p> <p>86.상소의 이익-상소의 이익의 판단기준(司 44)</p> <p>87.상소불가분의 원칙(司 51, 57)</p> <p>88.항소의 취하-소 취하와의 비교(司 51)</p> <p>89.부대항소-부대항소의 성질(司 51)</p> <p>90.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司 51)</p> <p>91.환송판결의 기속력(司 42, 55)</p> <p>*특별항고(法 11)</p> <p>92.재심의 소-법 제451조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p> <p>93.재심의 소에 있어 중간판결</p> <p>94. 간이소송절차(소액사건, 독촉절차)</p> <p>95. 공시최고절차</p>